

하천법 시행규칙

<목 차>

1. 하천점용허가 신청 제출서류 추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작 성 자	이름	박재철
	담당부서 (과)	하천안전팀		직급	시설사무관
	국장	송호석		연락처	044-201-7538
	과장	이현주		이메일	jaechul90@mail. go.kr

2026. 05. 10.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 국 장 성 명 : 송호석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하천점용허가 신청 제출서류 추가											
	2.규제조문	하천법 시행규칙 제 17조 별표4											
	3.위임법령	하천법 시행령제 34조 제1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5.18~2026.06.2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강도 및 빈도가 증가하여 하천의 치수안전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 강조 ○ 하천 내 점용허가 신청 시 설계도 등 제출하고 있으나, 점용 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하천시설 영향 검토 및 원상복구 계획 등을 사전에 고지·명확화 하는 규정은 미흡 － 허가 과정에서 원상복구 계획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해당 계획이 허가 신청서류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술검토 및 보완 대책 등 누락 가능성 존재 ○ 제방 등 하천시설의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점용허가 신청 시 하천시설 영향 검토 및 원상복구 계획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허가 단계에서 적절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조치로 판단됨											
	7.규제내용	○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의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에 점용허가 신청 시 하천시설 영향분석 및 복구계획서 제출 의무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점용허가 신청자</td><td></td></tr><tr><td>이해관계자</td><td>하천관리청(국가, 지자체)</td><td></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점용허가 신청자		이해관계자	하천관리청(국가, 지자체)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점용허가 신청자												
이해관계자	하천관리청(국가, 지자체)												
9.규제목표	○ 점용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통하여 하천관리청이 사전에 인지하여, 허가 단계에서 치수 안전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규제의	10.영향평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적정성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4] <u>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제17조제1항)</u>	■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4] <u>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제17조제1항)</u>																																								
<table border="1"> <thead> <tr> <th>점 용 목 적</th><th>첨 부 서 류</th></tr> </thead> <tbody> <tr> <td>토지의 점용</td><td>1. 위치도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td></tr> <tr> <td>하천시설의 점용</td><td>1. 위치도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td></tr> <tr> <td>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td><td>1. 위치도 2.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표준구조물도 4. 개략공사비 산출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6.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td></tr> <tr> <td>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td><td>1. 위치도 2. 공사설명서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td></tr> <tr> <td>토석(土石)·모래·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td><td>1. 위치도 2. 종단도 및 횡단도 3. 채취량산출서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td></tr> <tr> <td>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장의 설치</td><td>1. 위치도 2.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td></tr> <tr> <td>식물의 재식</td><td>1. 위치도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나무심기계획도 4. 나무가 다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td></tr> <tr> <td>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td><td>1. 위치도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td></tr> <tr> <td>선박의 운항</td><td>1. 위치도 2.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td></tr> </tbody> </table>	점 용 목 적	첨 부 서 류	토지의 점용	1. 위치도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시설의 점용	1. 위치도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1. 위치도 2.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표준구조물도 4. 개략공사비 산출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6.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1. 위치도 2. 공사설명서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토석(土石)·모래·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1. 위치도 2. 종단도 및 횡단도 3. 채취량산출서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장의 설치	1. 위치도 2.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식물의 재식	1. 위치도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나무심기계획도 4. 나무가 다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1. 위치도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선박의 운항	1. 위치도 2.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table border="1"> <thead> <tr> <th>점 용 목 적</th><th>첨 부 서 류</th></tr> </thead> <tbody> <tr> <td>토지의 점용</td><td>1. 위치도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td></tr> <tr> <td>하천시설의 점용</td><td>1. 위치도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4. 하천시설 영향분석 및 복구계획서(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의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td></tr> <tr> <td>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td><td>1. 위치도 2.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표준구조물도 4. 개략공사비 산출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6.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7. 하천시설 영향분석 및 복구계획서(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의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td></tr> <tr> <td>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td><td>1. 위치도 2. 공사설명서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td></tr> <tr> <td>토석(土石)·모래·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td><td>1. 위치도 2. 종단도 및 횡단도 3. 채취량산출서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td></tr> <tr> <td>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장의 설치</td><td>1. 위치도 2.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td></tr> <tr> <td>식물의 재식</td><td>1. 위치도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나무심기계획도 4. 나무가 다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td></tr> <tr> <td>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td><td>1. 위치도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td></tr> <tr> <td>선박의 운항</td><td>1. 위치도 2.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td></tr> </tbody> </table>	점 용 목 적	첨 부 서 류	토지의 점용	1. 위치도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시설의 점용	1. 위치도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4. 하천시설 영향분석 및 복구계획서(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의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1. 위치도 2.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표준구조물도 4. 개략공사비 산출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6.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7. 하천시설 영향분석 및 복구계획서(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의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1. 위치도 2. 공사설명서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토석(土石)·모래·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1. 위치도 2. 종단도 및 횡단도 3. 채취량산출서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장의 설치	1. 위치도 2.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식물의 재식	1. 위치도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나무심기계획도 4. 나무가 다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1. 위치도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선박의 운항	1. 위치도 2.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점 용 목 적	첨 부 서 류																																								
토지의 점용	1. 위치도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시설의 점용	1. 위치도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1. 위치도 2.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표준구조물도 4. 개략공사비 산출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6.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1. 위치도 2. 공사설명서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토석(土石)·모래·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1. 위치도 2. 종단도 및 횡단도 3. 채취량산출서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장의 설치	1. 위치도 2.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식물의 재식	1. 위치도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나무심기계획도 4. 나무가 다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1. 위치도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선박의 운항	1. 위치도 2.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점 용 목 적	첨 부 서 류																																								
토지의 점용	1. 위치도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시설의 점용	1. 위치도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4. 하천시설 영향분석 및 복구계획서(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의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1. 위치도 2.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표준구조물도 4. 개략공사비 산출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6.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7. 하천시설 영향분석 및 복구계획서(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의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1. 위치도 2. 공사설명서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토석(土石)·모래·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1. 위치도 2. 종단도 및 횡단도 3. 채취량산출서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장의 설치	1. 위치도 2.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식물의 재식	1. 위치도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나무심기계획도 4. 나무가 다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1. 위치도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선박의 운항	1. 위치도 2.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비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 서류 중 점용목적별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비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 서류 중 점용목적별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1) 추진배경

-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와 강도가 심화됨에 따라 하천의 치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하천 내 점용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제방 절개, 굴착, 구조물 설치 등으로 인해 하천시설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현행 제도에서는 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설계도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점용시설 설치 과정에서 하천시설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하천시설 영향 검토 및 원상복구 계획 등을 사전에 고지·명확화하는 규정은 미흡
 - 하천관리청은 허가 과정에서 하천시설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복구 계획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해당 계획이 허가 신청서류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술검토 과정에서도 누락될 가능성이 존재함
- 실제 허가 신청인이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해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허가신청서류를 작성하므로, 하천점용공사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하천시설 훼손 여부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주체임
- 따라서, 하천점용공사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하천시설 훼손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허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훼손 우려 사항 및 원상복구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검토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참고>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오송지하차도 참사 재난원인 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조사 결과에서 사고방지를 위해 "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하천시설 훼손 우려 사전 고지 의무"에 대한 권고 내용이 포함됨
- ※ 2023년 7월 15일 미호천교 도로확장사업과 관련한 하천점용허가 내용에도 미호강 제방을 훼손, 복구한다는 내용은 누락 되었으며, 시공사는 도로공사과정에서 임의로 제방을 훼손하고 부실하게 복구해, 인명피해(사망 14명, 부상 10명) 사고의 원인이 됨.

(2) 정부개입의 필요성

- 본 규제는 점용허가 신청자가 제방 등 하천시설의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점용허가 신청 시 하천시설 영향 검토 및 원상 복구 계획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허가 단계에서 적절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행정조치로 판단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하천점용허가 신청 제출서류 추가
	내용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의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에 점용허가 신청 시 하천시설 영향분석 및 복구계획서 제출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 추가로 제출한 서류를 통해 하천점용 공사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하천시설 훼손 및 복구에 대한 내용을 사전 검토, 관리 가능 - 하천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	-

- 본 대안은 점용허가 신청 시 제방 등 하천시설의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하천시설 영향분석 및 복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규정으로, 현재도 점용허가 협의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있어 실질적인 비용 부담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행정안전부 난안전조사과	'25.10.17~	사전고지의무 등 제도 개선 포함	반영

3. 규제목표

- 점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통하여 사전에 인지하여, 허가 과정에서 치수 안전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는 하천의 이용·관리 및 공공 안전 확보라는 중대한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점용허가 신청 시 제방 등 하천 시설을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하천시설 영향분석 및 복구계획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목적과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본 제도는 하천의 관리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시적 규정으로 일몰미설정이 타당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타 법률에서도 허가 시 관련 공사로 인해 기존 지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서 등 관련서류 제출을 규정하고 있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대나무의 벌채·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라.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한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사. 복구대상산지의 중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별지 제4호의 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

급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제출한 경우
- 2) 재해 예방 및 복구를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 3) 종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에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의 면제를 받아 종전 산지전용허가의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
- 4) 사업계획서 상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 5) 둘 이상의 송전시설이 그 주변 사면 및 계곡 등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경우로서 각 송전시설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 그 밖에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가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붕괴나 토사유출의 위험이 없는 것 또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와 그 주변지역의 지형이 평탄지인 경우로서 붕괴나 토사유출의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인정하는 경우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본 규정의 취지상 하천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제방 등 하천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당한 경우 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 신청서 제출 시 관련 설계도 및 공사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실제 공사 과정에서 하천시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사전협의를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허가 신청인은 신청 단계에서 이미 하천시설 훼손 가능성 등을 예측할 수 있음
- 본 규정은 이러한 실무 관행을 법령상 명확히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기술적·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본 규제는 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하천시설의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하천시설 영향분석 및 복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하천관리청은 기존 허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설계도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직 신설 등이 필요하지 않아 행정집행에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본 규제는 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하천시설의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하천시설 영향분석 및 복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업무는 기존 인력과 조직에서 집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추가 재정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폭우로 인한 미호천교 제방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 발생('23.7)
-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기후부고시) 개정('24.4.29)
 - 제방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요 검토사항 누락 방지를 위해 점용허가 시 전문가 기술검토 의무화 규정 신설
- 오송지하차도 사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25.9)
 - 국정조사 후속조치인 관계기관 재난원인조사 지적사항에서 공사정보 공유체계 보완 등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25.10)

2. 향후 평가계획

- 시행 이후 점용허가 과정에서 제출 서류 및 허가 조건 부과 사례 등을 분석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할 예정으로 필요 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출 서류 등을 보완할 계획

3. 종합결론

- 본 규제는 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하천시설의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하천시설 영향분석 및 복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치수 안전성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로 판단되며, 기존에도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법령에 명확화하는 규정으로 별도의 경제적 부담이나 행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허가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제도라는 점에서 적절한 제도로 판단됨